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Chungak 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사이버 견본주택(<http://xi.co.kr/asy>)에서도 동시 운영되므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견본주택 입구에서 방문이력 시스템 입력을 거부할 경우 (방문자 성명, 연락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예방 및 확산상황,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예약 방문자 1인(동반 1인 허용)에 한하여 견본주택 입장과 관람이 가능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인원을 최소화하여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증에 취약한 노령층, 아동 및 임산부는 견본주택 방문을 지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방식은 예약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청약 및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03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단지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798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홈페이지(<http://xi.co.kr/asy>) 및 자이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2.11.08.(화)	2022.11.09.(수)	2022.11.10.(목)	2022.11.16.(수)	2022.11.21.(월) ~ 11.25.(금)	2022.11.29.(화) ~ 12.01.(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견본주택 (10:00~16:30) (사전방문 예약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 상기 기간은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만 해당되며, 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른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운영계획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예정)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신청일은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되고 청약자를 위한 상담석만 운영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일반관람객은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되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자격확인 서류접수를 위한 목적으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기간 내 견본주택 관람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관람객 /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장 불가)

■ 분양권 전매제한 (특별공급 / 일반공급)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주택공급 계약체결 이후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대금 총액의 10% 납부 후 전매가 가능하며,
전매 가능일자는 사업주체가 별도 통보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2.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 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의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판단)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단, 90일 이내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단독세대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불인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조,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이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분양권 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르며, 특별공급 청약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치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추가 필요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적용	소득 또는 자산기준 적용	세대주 요건 필요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해당지역/기타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 세대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인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② : 청약자 또는 세대원)		결과
부적격 예시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당첨 [②]	①, ② 부적격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②]	① 부적격 / ②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추첨 불가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낙첨 [②]	① 부적격 ※ 낙첨자의 청약신청 이력으로 당첨자 부적격 영향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검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검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018-784호, 2018.12.11. 부칙 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지역우선공급(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

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및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 재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고 세액은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8조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6억 초과 주택형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행위자(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10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단,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합니다. (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주택과 – 52016호(2022.11.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137-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5층, 5개동, 총 7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 376세대 (기관추천 : 71세대, 다자녀가구 : 71세대, 신혼부부 : 145세대, 노부모부양자 : 18세대, 생애최초 : 71세대)

입주예정시기 : 2026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계		
2022000798	01	074.9277A	74A	74.9277	26.8764	101.8041	50.7664	152.5705	38.3846	72	7	7	14	2	7	37	35	-
	02	074.9558B	74B	74.9558	26.7788	101.7346	50.7853	152.5199	38.3990	57	5	5	11	1	5	27	30	1
	03	082.4072	82	82.4072	28.9329	111.3401	55.8340	167.1741	42.2162	15	1	1	3	-	1	6	9	3
	04	084.6507A	84A	84.6507	30.2779	114.9286	57.3540	172.2826	43.3656	231	23	23	46	6	23	121	110	7
	05	084.9259B	84B	84.9259	30.6351	115.5610	57.5405	173.1015	43.5065	191	19	19	38	5	19	100	91	5
	06	084.9532C	84C	84.9532	30.3878	115.3410	57.5589	172.8999	43.5205	133	13	13	26	3	13	68	65	4
	07	084.2737E	84E	84.2737	30.1742	114.4479	57.0985	171.5464	43.1724	35	3	3	7	1	3	17	18	1
	08	149.7329A	149A	149.7329	56.2162	205.9491	101.4498	307.3989	76.7065	2	-	-	-	-	-	-	2	-
	09	149.5254C	149C	149.5254	55.0917	204.6171	101.3093	305.9264	76.6002	3	-	-	-	-	-	-	3	-
합계										739	71	71	145	18	71	376	363	21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정산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 조건은 무이자가 적용이며,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선택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74A	74B	82	84A	84B	84C	84E	149A	149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아산시,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4	1	1	4	4	3	1	-	-	18
	국가유공자 등	1	1	-	3	3	2	-	-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3	2	1	-	-	-	7
	10년 이상 복무군인	1	1	-	7	5	3	1	-	-	18
	중소기업 근로자	1	1	-	6	5	4	1	-	-	1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	5	1	23	19	13	3	-	-	71
신혼부부 특별공급		14	11	3	46	38	26	7	-	-	145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1	-	6	5	3	1	-	-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7	5	1	23	19	13	3	-	-	71
합계		37	27	6	121	100	68	17	-	-	37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

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로 판단됩니다.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청약저축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청약저축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1순위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저축 예치금액]</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아산시,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th> <th>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거주자)</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 이상</td> <td>250만원 이상</td> <td>300만원 이상</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 이상</td> <td>400만원 이상</td> <td>600만원 이상</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 이상</td> <td>700만원 이상</td> <td>1,000만원 이상</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 이상</td> <td>1,000만원 이상</td> <td>1,500만원 이상</td> </tr> </tbody> </table>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아산시,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거주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아산시,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거주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구 분	내 용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p>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p>■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p> <p>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발표됩니다.)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제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를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등·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등·호 발생 시에도 등·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와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140%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추첨기관

구분	해당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등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중소기업 근로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미성년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추첨]

- 해당지역(아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①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② 영유아 자녀수	15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③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④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청약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①, ②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③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③, ④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④, ⑤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⑥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④ 무주택 기간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청약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0세인 청약자와 만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2세인 무주택인 청약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만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산정 : 청약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청약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8세인 청약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청약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윤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거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윤용지침'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 소득기준
 - ① 우선공급 [세대수의 50% (소수점 이하 올림)]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일반공급 [세대수의 20% (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 ③ 추첨공급 [남은 주택 (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일반공급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와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혼인외의 출생자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재혼일 경우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자녀가 없거나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生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우선공급 - 기준소득 [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 상위소득 [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적용기준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제외사항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 가구(단독세대 -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제로 청약 가능
 - 1인 가구(단독세대가 아닌 자)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추첨제로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 ※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공급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인 가구	160% 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1인 가구(단독세대) -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제로 청약 가능
- 1인 가구(단독세대가 아닌 자)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추첨제로 청약 가능

가구원수 적용기준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청약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근무월수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제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단, 1인 가구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한 경우로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노부모부양자 신청자격 불인정)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추첨]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명	15	6명 이상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 또는 장기 해외체류중에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신청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청약 신청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p>■ 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 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 가능)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총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해당지역/기타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세대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인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총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총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총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1. 해당지역 : 아산시 거주자	1순위	전용 85m ²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해야 합니다.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85m ² 초과 - 추첨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구 분	아산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기타지역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 ² 이하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02m ² 이하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35m ² 이하	4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 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산정기준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친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친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3조)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분양권 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하 '소형·저가주택 등'이라 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않은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3)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청약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수 인정 적용기준

산정기준

1)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청약자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

- 가) 청약자의 배우자
- 나)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
- 다)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 포함)를 아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2) 배우자 -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3)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나) 단, 직계존속 1인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예 :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마)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

4)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를 포함하며,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나)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청약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청약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 또는 장기 해외체류중에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총점	84					

$$\text{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 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 /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 신청자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이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IV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2022.11.08.(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 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만 가능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166-5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2022.11.09.(수) 09:00~17:30 2022.11.10.(목)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접수시간 : 09:00~16:00)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청약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부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td></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부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일정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11.16.(수)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p>※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p>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됩니다.)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16.(수) ~ 2022.11.25.(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공일시	2022.11.1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유의사항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2022.11.21.(월) ~ 2022.11.25(금) (10:00~16:30)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견본주택 (사전 방문예약제)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166-5번지)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하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로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중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의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고지 예정으로 고지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 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자격확인서류(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협장 접수 시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input type="radio"/>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다자녀가구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input type="radio"/>	한부모가족증명서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혼부부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또는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radio"/>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 부양자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생애최초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input type="radi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input type="radio"/>	소득증빙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input type="radio"/>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증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input type="radi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input type="radi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등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input type="radio"/>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을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 날인)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홈택스) ② 등기소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내용 동일	
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2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유형별 과거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 서류

해당자격	제출서류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사실 확인 서류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일 경우

- 일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 (단, 신고서상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산기준 입증서류	부동산 소유현황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 소유자	① 해당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② 재산세 납부내역 ③ 해당 보유 부동산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 토지/주택 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흠텍스 / 시가표준액 : 위텍스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정부24 ② 위텍스 ③ 해당 사이트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증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인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현장 접수 시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합함)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 2022.11.29.(화) ~ 2022.12.01(목) (10:00~16:30)	•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견본주택(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166-5번지)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신한은행	140-013-880238	(주)하나자산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동·호수

- 상기 계좌는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2차 계약금 및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부터는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 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청약자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대리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당첨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급임대주택,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포함)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2차 계약금에 대하여는 할인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미적용)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원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 ²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 20m 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6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특별공급 제외)
7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단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0호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
※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합니다.

구분	공급세대	접수	당첨자	정당계약 (분양권①)	잔여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 (분양권②)	분양권 현황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	미계약		
A주택	100	200 (경쟁)	100	100	×	×	×	• 분양권① 주택 소유
B주택	100	200 (경쟁)	100	80	×	20	20	• 전체 분양권 주택 소유 (미분양 아님)
C주택	100	50 (미달)	50	30	50	20	70 (50+20)	•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전체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 포기 후 분양권② 계약 시 주택 소유)
D주택	100	50 (미달)	50	50	50	×	50	•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주택 미소유

※ 잔여세대 추가계약(분양권②) :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 소유)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저가주택 등' 특례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소형·저가주택 등' 경합 시	주택 수	적용기준
[① 제53조 각 호(5호 제외 - 20㎡ 이하)] ⊕ [②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①, ② 무주택 인정
[① 제53조 각 호] ⊕ [② 제5호(20㎡ 이하)]	1	① 무주택 인정 / ② 특례 미적용
[①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②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③ '소형·저가주택 등']]	1	①, ② 무주택 인정 / ③ 특례 미적용
[① 제53조 각 호(5호 제외 - 20㎡ 이하)] ⊕ [② '소형·저가주택 등']	1	① 무주택 인정 / ② 특례 미적용
[① 제53조 제5호(20㎡ 이하)] ⊕ [② '소형·저가주택 등']	2	①, ② 특례 미적용
[① '소형·저가주택 등'] ⊕ [② '소형·저가주택 등']	2	①, ② 특례 미적용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응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권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계약금 납부 이후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유무,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주택 소유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위탁자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 입주지정 최초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시행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내내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시행위탁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입증, 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74A	74B	82	84A	84B	84C	84E	149A	149C
공급금액	15,200,000	13,700,000	15,700,000	20,100,000	13,900,000	16,500,000	20,200,000	30,200,000	32,100,000
계약금 (10%)	1,520,000	1,370,000	1,570,000	2,010,000	1,390,000	1,650,000	2,020,000	3,020,000	3,210,000
중도금 (10%)	2023.06.20	1,520,000	1,370,000	1,570,000	2,010,000	1,390,000	1,650,000	2,020,000	3,020,000
잔 금 (80%)	입주지정일	12,160,000	10,960,000	12,560,000	16,080,000	11,120,000	13,200,000	16,160,000	24,160,000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13-880260	(주)하나자산신탁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약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적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외부재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과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어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 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은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 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어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해제 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옵션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설비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공급대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3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공유오피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스카이라운지 등
- 지하주차장 높이 : 지하주차장 3층 진입 및 유효높이는 2.7M, 지하주차장 1층, 2층 유효높이는 2.3M, 주차장 차로 폭은 6M 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본 사업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③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과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④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⑤ 본 분양물건은 아산용화체육공원사업 중 비공원부지에 공동주택(1단지, 2단지)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단일하게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으로, 신탁계약의 목적달성 및 공동주택(1단지, 2단지)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공동주택(1단지, 2단지)의 분양대금은 단지별 구분 없이 공원사업 및 공동주택(1단지, 2단지)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기타 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⑥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상 호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무소
금 액	2,715,230,100

※ 상기 감리금액은 2017.06.07. 주택건설사업계획(2017-허가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기준으로 인허가 및 실제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주)하나자산신탁	하이스용화공원(주)	지에스건설(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71, 201호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등록번호	110111-1714818	161511-0257365	110111-0002694

X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를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는 다른 단지입니다. 각각 관리비가 정산이 되고, 각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UB XIAN은 입주자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UB XIAN 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홍보물은 2022년 9월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 2022년 4월 12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북측에는 남부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헨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지내 용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주변 용화체육공원 내 공원시설(예정)에는 도로 및 광장 등 기반시설, 플랜트 등 조경시설, 파고라, 스탠드 등 휴양시설, 종합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농구장 등 운동시설, 어린이체력 단련시설 등 유휴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등 관리시설이 있으며, 공원조성 시설물과 외부통행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단지모형도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용화체육공원의 확정 계획에 따라 단지와의 연계동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원과의 단차 및 출입으로 인해 해당 출입구 주변의 저층부에서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은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묘 등이 존재하오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변에 용화동 성당 묘원, 맹희 도묘 등 분묘가 존재하며 그 외 확인되지 않은 무명의 분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동에는 분묘 조망,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체육공원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인도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의 변경은 주변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부지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의 2 및 제6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통한 조치계획에 따라 비공원시설 내(공동주택) 영구저류조가 설치되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됩니다. 단지 내 설치된 영구저류조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따른 비용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p>은 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주체는 최초 2년간 사업시행자인 (주)하이스종합건설에서 유지관리 주체가 되며, 이후 입주민이 구성한 주민자치회가 유지관리 주체를 승계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서쪽 사업부지에는 추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아산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아산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는 아산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산초등학교의 교육시설 확충(보통교실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및 비품)이 필요하여 아산교육지원청과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1단지에서 아산초등학교까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훈스 및 과속카메라가 신규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아산모종샛들지구 내 가칭 "모종중학교" 2025년 3월 개교 시 온양학군에 배치할 예정이나, 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바, 확정 개교일이 부득이 입주개시일과 맞지 않을 경우 학교 신설 시까지 임시배치(모듈러 교실 및 비품 포함) 및 통학 지원(통학차량 운영 등) 대책 등에 대하여 아산교육지원청과 재협의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는 2022년부터 충청남도교육감 전형으로 아산지역에 지원 후 추첨을 통하여 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배정 계획은 향후 사업계획(개발 및 입주시기, 위치, 주택형 세대수 등)의 변경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4동 북서측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용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1동 3, 4호 라인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스카이라운지 내부조명 및 외부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105동의 세대 전후면에 용벽이 설치되어 용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1동, 102동 동측에는 용화체육공원 내 체력단련장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어린이집 인근과 104동 후면부에는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이 설치됩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식 쌓기 또는 응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역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상1층 - 102동 인근, 103동 인근, 104동 인근, 105동 인근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옥상층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하2층 - 102동 제연환룸, 104동 제연환룸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과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응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외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응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석재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CLUB XIAN,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및 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CLUB XIAN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CLUB XIAN)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약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LUB XIAN(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라운지, YBM영어도서관 등) 및 부속동(아너스클럽, CLUB CLOUD 등) 및 일부 공동부(지하 공동창고등)에는 입주자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준공 후 입주자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민 부대복리시설인 CLUB CLOUD(OCS), 작은도서관(YBM)은 별도 약정된 기한 동안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운영 예정이며, 해당 공간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동력용수광열비 등은 입주민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력용수광열비 등의 부담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담되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입주민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담되거나 사용자(수익자) 부담으로 부과 예정이오니 계약자께서는 계약 시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YBM)은 이용 시 개별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이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전문 위탁관리업체의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화프로그램 이용 시 개별비용 발생 및 개별세대에 관리비로 부과되며, 전문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 운영 종료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공된 공사 부위, 추가 설치된 전자제품 및 집기/비품 등을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철거 및 반납되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작은도서관(YBM)은 지에스건설㈜가 (주)와이비엠넷에 위탁 의뢰하여, 작은도서관에 영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운영(2년)할 예정이며, 운영 기간 내 운영비는 사업주체(시행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별도 약정된 기한 이후에는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작은도서관(YBM)은 입주민들에 한해 2년간 무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사업주체의 별도 비용지원을 통하여 운영되는 주거 특화 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주체의 지정을 통해 선정된 입주관리 예정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이후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CLUB CLOUD(OCS)는 이용 시 개별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이며, 향후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예정이나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전문 위탁관리업체의 협의과정에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CLUB CLOUD(OCS)는 입주민 스스로 커피를 추출하는 오픈 커피스테이션으로,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커피머신, 장비 및 인테리어 집기류는 제공되며 이용 시 개별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운영시간 및 방식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LUB CLOUD 실외기실의 난간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 테라스 공간 일부에 하부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CLUB XIAN)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은 인허가상 1단지와 2단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단지별로 설치시설이 상이하며 단지간 상호이용은 불가하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실, 훈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961대, 근린생활시설 6대, 총 967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49개(급속 15개, 완속 15개, 콘센트 19개)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속 전기차 충전설비 중 1개는 AC3상, DC콤보,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이며, 나머지 14개는 DC콤보와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입니다.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3층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지하1, 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 2, 3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 1층 주차장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에서는 직접 출입이 불가하나 103동, 104동은 필로티 및 CLUB XIAN을 통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획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북동측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단위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펜트하우스 세대는 2,400mm)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현관창고, 비획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설, 보일러실,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펜트하우스 및 옥외공간 탑입 하부 세대의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및 옥외공간 탑입 하부 세대에서는 상부세대 옥외공간의 배수관 설치로 인해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탑입 상부 세대는 우천 시 옥외공간 상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의한 빗물 틈과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사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상층 단열 및 배수조건으로 발코니 천장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레벨은 물넘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 우수 및 배수 입상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공간의 한계로 빨래건조대 걸이봉 확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은 보일러, 바닥 배수구, 도시가스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면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문턱의 높이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단열재 시공여부에 따라 실외기실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우/오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기와 각종 배관, 덕트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실과 인접한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출입용 분할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향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프레임 포장재는 PVC 재질이며 해당 재질의 색상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 설치 관련 본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호의 색상 및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펜트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 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용 수전이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

	<p>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 시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오픈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홈구멍)을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원목마루, 강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 거실아트월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 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차이, 줄눈 두께 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우물천장 몰딩은 PVC 위 래핑으로 마감됩니다. • 월패드는 신규디자인 개발 제품으로 제품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시스클라인(옵션 선택 시)의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통합형 온도조절기는 신규디자인 개발 제품으로 모양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시스클라인(옵션 선택 시)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벽부형 매립배관은 천장 속 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박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액자형 에어컨 설치 시 드레인 펌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의 손잡이 디자인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타일은 멀티패턴타일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 욕실 바닥난방 (욕조, 샤워부스 제외) 및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며, 바닥레벨은 물넘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에는 금수급탕 분배기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설비 및 마감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는 실외기 설치에 용이하도록 규격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설치된 제품과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불박이장, 세탁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발코니 확장 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특화 패키지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목마루의 특성상 용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하자가 아닙니다. • 주방 Style Up, 마감 및 조명 Style Up, 욕실 Style Up 옵션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Style Up에 포함된 다용도실 보조주방의 경우, 74㎡A, 74㎡B, 82㎡, 84㎡C 타입은 다용도실 사이즈를 고려 미제공됩니다. • 일부 타입 주방 Style Up에 포함된 다용도실 보조주방의 상판은 엔지니어드스톤 자재로 시공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자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자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 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주택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세대 내 음성인식 시스템(월패드, 유상옵션 주방TV)은 거리, 음성엔진 인식범위, 주변소음, 전파방해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성인식 업체의 정책에 의하여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전기쿡탑 기본적용으로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까지 제공됩니다.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옵션 선택 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형 주택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간제약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 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침실 전자식스위치는 유상옵션형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일반형 전자식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TV는 유상옵션형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주방TV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마련된 YBM 부스의 경우, 고객상담 및 홍보목적으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천장고 높이, 인테리어 디자인 및 마감재, 가구·집기류는 실제 1단지에 위치한 도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단지 작은도서관의 천장고 높이는 2,700mm이며,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높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마련된 OCS 카페테리아의 경우, 고객상담 및 홍보목적으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천장고 높이, 인테리어 디자인 및 마감재, 가구·집기류는 실제 1단지 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74㎡A, 74㎡B, 82㎡, 84㎡C, 84㎡E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 84㎡B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149㎡A, 149㎡C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92㎡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6억 초과 주택형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166-5번지
운영시간	10:00 ~ 17:00
운영기간	분양종료 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644-4432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http://xi.co.kr/asy